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6 선고 2017가단11017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4. 2.

판결 선고2018. 4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,546,213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심병직

별지